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시·도지사가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3460호, 2023. 5. 9. 공포, 5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정관 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각종 신고·신청 서식의 첨부서류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(안 제2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

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, 임원 명부, 설립동의자 명부를 각각 별지 제2호, 제3호, 제4호로 신설.

나. 정관 변경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(안 제2조의2)

시행령 제8조의2 제1항,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별지 제6호로 신설.

다.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(안 제5조의2 제2항, 제3항)

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조합원 명부, 사업계획서 양식을 각각 별지 제4호, 별지 제2호로 신설.

라. 해산신고 시 필요 서식 및 절차 신설(안 제6조)

조합의 해산신고서를 별지 제9호로 신설하고, 해산 신고 시 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,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, 해산 당시의 정관의 사본 및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며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.

마.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 서식 및 절차 신설(안 제7조)

조합의 청산 종결 신고서를 별지 제10호로 신설하고, 청산 종결 신

고서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.

바.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(안 제11조, 제12조)
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일부개정법률안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별지 제2호서식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”으로 한다.

-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- ③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-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설립동의자 명부는 별지4호서식과 같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정관변경) 영 제8조의2제1항,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
제5조제2항 중 “별지 제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7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별지 제3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7호의2서식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별지 제4호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4

호서식과 같다.

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조합의 해산신고)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, 연합회 및 전국 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
2.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
3.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
4.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호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조합의 청산종결신고)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「민법」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,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종전의 제6조) 제1항 후단 중 “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, “”를 ““공정거

래위원회”로, “설립동의자”는 “설립동의조합”으로, 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”를 “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, “설립동의자”는 “설립동의조합”으로,”로 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신고) ① 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법 제53조제2항”은 “법 제69조”로 “조합”은 “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본다.

② 전국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법 제53조제2항”은 “법 제80조”로, “조합”은 “전국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본다.

제12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신고)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”은 “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본다.

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”은 “전국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조합의 설립인가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② · ③ (생략)</u> ③ 시·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<u>별지 제2호서식</u> 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<u><신 설></u>	제2조(조합의 설립인가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</u> <u>③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</u> <u>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설립동의자 명부는 별지4호서식과 같다.</u> <u>⑤ · ⑥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u> <u>⑥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 별지 제5호서식 -----</u> <u>-----</u> <u>제2조의2(정관변경) 영 제8조의2 제1항, 제15조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</u>
제5조(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) ① (생략)	제5조(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보건·의료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제공 실적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.

제5조의2(보건·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) ①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② -----

---- 별지 제7호서식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 별지 제7호의2서식-----

-----.

제5조의2(보건·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) ① -----

----- 별지 제8호서식-----.

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

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신 설>

제6조(조합의 해산신고) ① 법 제 53조제2항에 따라 조합,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
2.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
3.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
4.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7조(조합의 청산종결신고)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「민법」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,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

제6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)

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”은 “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, “영 제6조제1항”은 “영 제15조제1항”으로, “영 제7조제1항” 및 “영 제7조제3항”은 “영 제15조제2항”으로 본다.

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”은 “전국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“영 제6조제1항”은 “영 제17조제1항”으로, “영 제7조제1항” 및 “영 제7조제3항”은 “영 제17조제2항”으로 본다.

제7조·제8조 (생략)

<신설>

법」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)

① -----
-----.

-----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, “설립동의자”는 “설립동의조합”으로, “-----
-----.
-----.

② -----
-----.

-----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, “설립동의자”는 “설립동의조합”으로, -----
-----.
-----.

제9조·제10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

제11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신고)

① 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

<신 설>

다. 이 경우 “법 제53조제2항”은 “법 제69조”로 “조합”은 “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본다.

② 전국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법 제53조제2항”은 “법 제80조”로, “조합”은 “전국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본다.

제12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신고)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”은 “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본다.

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”은 “전국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공정거래위원회”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433